

위원회는 향후 3년 동안 강화된 인적역량을 기초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인권교육 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 등에 주력할 것이다.

## 실천계획

### 4.1.1.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위원회는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년 동안 인권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인권 교육적 시도들을 해왔다. 이러한 시도들은 인권교육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우리 사회에 인권교육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여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아직 사회 각 분야에 어떤 인권 교육적 수요들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하며, 한편으로는 인권 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분야별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인권영역에서의 교육 필요성을 평가하고, 인권교육 연구 공동체 구성 등 기초연구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 4.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과 교육 우선순위에 따른 분야별·단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UN도 인권교육10개년계획(1995-2004)에 따라 종합적인 접근을 한 다음 시기별로 인권교육 집중강화 영역을 선택하여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7)을 수립·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군 분야에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분야별 인권교육 로드맵 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제한된 범위에 그쳤다. 위원회는 향후 3년 동안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분야별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권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4.1.3.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

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별, 주제별, 국내적, 국제적 기관/단체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의 정체성, 방향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공동체(가칭 인권교육 포럼) 구성을 추진하며,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인권교육과 관련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인권교육 전문가 풀을 만들어 필요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세부목표 4.2. 다양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추진**

인권교육의 실시에 있어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인권교육이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학교교육과정, 공공기관 종사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교육 대상별, 영역별, 주제별, 기관별로 인권교육 현황과 여건 등을 분석하고, 위원회가 가진 다양한 권한들을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정규 과목화 하는 등 제도화하기 노력할 것이다.

### **실천계획**

#### **4.2.1.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

UN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을 각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권교육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각급학교에 인권교육과정을 필수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향후 3년간 각급학교에 인권교육 과정이 개설·운영되도록 협의·지

원하고, 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한편으로는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 4.2.2. 공공부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법집행 공무원, 군대와 같은 특수기관,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다수인시설 종사자, 교원, 우리사회의 여론 지도층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는 UN의 주요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경우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입직교육 및 각종 직무 연수 프로그램에 인권교육과정이 설치·운영되도록 하고, 교육에 필요한 인권교육 자침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지원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각 기관의 자체 인권교육을 담당할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인권교육 과정도 운영할 것이다.

#### 4.2.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 강화

세부목표 4.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많으나 공급수준은 매우 낮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사회적 발언권이 약하고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공공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인권교육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인권 침해 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기회를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인권영화, 만화, 포스터 등 사회적 확산효과가 큰 인권 문화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인권옹호집단(언론인, 기업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 시설 등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세부목표 4.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행체제 구축**

위원회는 지난 4년간 인권교육 과정 운영,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기관과의 다양한 협의 등 인권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다. 위원회는 이제 그동안의 경험들을 기초로 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행체계를 보다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특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사이버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인권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원 설립도 추진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4.3.1.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인권교육은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인권적인 교육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을 다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의 전 프로세스가 인권적인 기준에 부합해야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요청에 부응하고, 인권교육다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와 교육자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인권교육 우선 집중대상별, 수준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듈을 개발·보급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육자를 교육하는 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 **4.3.2.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의 하나로서 강조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인권교육 수요가 예상되나 교육자료 및 교육시설 등 인권교육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인권교육이 기존 교실중심 소집형 교육방식으로만 운영될 경우 소수의 학습자

에게만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오프라인 인권교육 보완하면서 직장·가정 등 각자의 사적·공적 생활현장에서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하여 적시에 인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 4.3.3. 인권교육원 설립추진

인권교육의 수요의 확산·다양화에 따른 인권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인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인권교육을 전담할 (가칭) 인권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대상별, 수준별 체계적인 인권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인권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권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 목표 5

## 위원회 역량 강화

### 5.1.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5.1.1. 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5.1.2.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강화

5.1.3.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5.1.4.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5.2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5.2.1.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

5.2.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공유

5.2.3.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윤리 강화

### 5.3. 국내·외 협력체제 강화

5.3.1.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

5.3.2.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강화

5.3.3. 아시아지역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기여

### 세부목표 5.1. 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과 지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외부환경과의 적절하고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위원회가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은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조

직구성원들은 위원회법상 명시된 역할과 지위를 명확하게 인식,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및 위원회의 각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과 지위 및 권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 고자 한다.

## 실천계획

### 5.1.1. 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위원회가 무소속 독립 국가기관으로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시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독립된 인권전담기구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사무처와의 관계의 정립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대 정부관계', '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계', '위원회 운영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 '독립청사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다.

### 5.1.2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강화

위원회는 무소속·독립기관으로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권고를 해왔다. 이를 권고 가운데 상당수는 해당기관에 의해 수락, 이행되었지만 더러는 이행되지 않고 방치 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출범 초기부터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정 명령권과 같은 강력한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파리원칙이 천명하고 있는 무소속 독립국가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의 정체성과 깊이 연관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무소속 독립 권고형 국가인권기구로서 위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권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위원회의 조사·권

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권고가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행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국내외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의 수준을 개선하고, 이해당사자 집단과의 상시적인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권고 이행력을 높이며 이를 집단을 통한 사전 인권보호 예방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

### 5.1.3.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위원회는 위원회의 장기적인 비전과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역할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합의와 헌신을 이끌어내어 위원회의 내부적 지지기반을 튼튼히 하고, 이러한 내부적 단합된 지지기반을 토대로 대외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 정체성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정기적인 워크샵 등을 통해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직원들이 함께 위원회의 비전을 검토하고, 차년도 사업 방향 및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구성원의 헌신과 역량 집중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 5.1.4.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위원회는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표준화 모듈을 개발하고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며, 업무상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공동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 계속성,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효율적 업무 매체로서 매뉴얼을 개발하되, 종래의 직무별 통합 매뉴얼은 물론 사건유형별 매뉴얼과 같은 업무유형별 매뉴얼 제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핵심 역량요소를 도출한 후,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다.

## **세부목표 5.2.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무소속·독립 국가기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스스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윤리성 및 투명성을 요구, 통제하여 독립성 확보 기반을 형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계획을 수립·실시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5.2.1.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고 대국민, 전문가 집단,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활동, 위상, 이미지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이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평가를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 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 **5.2.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공유**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는 위원회의 위상 강화의 필수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잘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의 공보활동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전방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언론대상 간담회 및 브리핑 수시운영, 웹진과 메일링 리스트의 효과적인 활용, 쌍방향 홍보물 제작, 국민참여 프로그램(명예 인권 위원, 시민인권조사관, 청소년 인권모니터단, 위원회 평가단 등)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이다.

### **5.2.3. 위원회 구성원의 직무윤리 강화**

위원회가 무소속·독립 국가기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스스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윤리성 및 투명성을 요구, 통제하여 독립성 확보의 윤리적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구성원으로서 인권적 교양과 품위 유지, 업무 태도와 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고양하고 구성원들이 위원회의 일원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구성원들이 대외활동에 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 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직무윤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보장할 것이다.

### **세부목표 5.3. 국내·외 협력체제 강화**

위원회의 역할은 위원회의 독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 및 지방 정부, 인권·시민 사회 단체, 전문가, 시장, 국제사회 등과의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위원회는 관련기관/단체/개인과의 상시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 **실천계획**

##### **5.3.1.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

위원회는 국제사회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국내의 인권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고, 국제 인권이슈의 국내 소개 및 활발한 인적교류 활동을 통해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상시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UN 및 UN관련 기구, 인권관련 국제기구들이 모여 있는 제네

바 또는 뉴욕에 연락관을 파견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의 인권현안을 국제화하도록 하며, 주요 국제기구에 위원회 직원을 인턴으로 파견하여 주요 인권 이슈영역의 흐름, 주요 기관들의 동향, 인권정보 등을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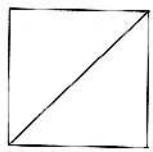
### 5.3.2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강화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제도, 정책적 체계 확립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국내 인권 현안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인권·시민단체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위원회와 NGO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이다. 특히, 대학·인권관련 학계와의 연구용역 사업 추진 및 인권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통해 위원회와 인권관련 연구 그룹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위원회의 이론적, 학문적 토대를 발전시킬 것이다. 또한 향후 차별행위와 관련한 위원회 진정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성별,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고용 상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차별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위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해 나갈 것이다.

### 5.3.4 아시아지역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기여

위원회는 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주요 인권현안을 발굴 또는 현재 협력하고 있는 공통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PF를 비롯한 각 국가 인권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지역내 국제기구 및 NGO,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안번호	제06-01호
보 고 연 월 일	2006. 1. 23. (06년 제2차)

논의안건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기획(안)

제 출 자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제출년월일	2006. 1. 23.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기획안

### 1. 업무전략기획안 상정경위

- 2005년도 제24차 전원위원회(2005. 11. 28. 개최)가 사무처가 작성한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전략기획초안』 검토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에 검토를 위임
  - 특별위원회 구성(인권위원 5인) : 최영애 정책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정강자, 김호준 상임위원, 신혜수, 김만흠 비상임위원이 특위 위원으로 선임됨.
- 특별위원회는 2005. 12. 14. 제1회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 명칭, 사무처 참가범위, 특위 업무관장 범위, 검토 방법 등을 결정
  - 특위의 명칭은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이후 '특위')로 함.
  - 발전기획단은 해산하고, 사무처의 특위 참가범위는, 사무총장, 전 발전기획단 3개팀 팀장 및 간사로 함.
  - 특위의 업무관장범위는 “우선적으로 업무전략기획안을 검토하고, 이어서 위상강화기획안과 역량강화기획안 중 위원회 심의 필요사항”으로 함
  - 특위는 사무처가 제시한 초안을 기초로 검토하되, 초안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함.
- 특위는 이후 2006. 1. 17.까지 총 7회의 회의를 갖고 사무처가 제시한 업무전략기획 초안 내용 검토를 완료하여, 금일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기획안(2006-2008)』을 상정하게 됨.  
※ 업무전략기획안의 세부내용은 복임1.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기획안(2006-2008)』 참조

## 2. 특위 주요 논의사항

### 가. 위원회 비전관련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며, 증진되는 사회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 단, “모든 사람의 인권”으로 할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으로 할지는 전원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나. 위원회 사명관련

-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 취지에는 공감, 문구 수정필요
-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존치)
- ※ 단, “헌법”과 “국제인권규범”的 기술 순서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인권에 관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

### 다. 운영원칙

-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투명성, 책무성, 합리성, 예의와 헌신, 연대성 ⇒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투명성, 책무성, 접근성, 예의와 헌신, 인권감수성, 협력과 연대
- ※ 합리성(삭제), 접근성, 인권감수성(추가), ‘연대성’을 ‘협력과 연대’로 변경

### 라. 위원회 5대 목표

-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기능’ 삭제)
-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존치)

- 목표 3.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 ⇒ 목표 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만족도’ 삭제, ‘접근성’ 추가)
- 목표 4. 인권가치의 보편화를 위한 체계적 인권교육 및 홍보 ⇒ 목표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홍보’ 삭제, 문구 수정)
- 목표 5. 위원회의 위상 및 역량 강화 ⇒ 목표 5. 위원회의 역량강화(‘위상’ 삭제)

#### 마. 세부목표 및 실천계획

- 위 목표의 수정에 맞추어 하위 내용 수정
- ※ 특위의 세부논의 사항 및 수정사항은 붙임2.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참조

### 3. 전원위원회 논의사항

#### 가. 위원회 비전 관련

-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VS.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나. 위원회 사명관련

-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의 문구수정
-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 한다” 관련,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나열 순서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기획안(2006~2008)

2.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7부. 끝.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기획(안)(2006년-2008년)

### = 목 차 =

1. 업무전략기획(Strategic Plan) 작성 개요
  - 가. 작성목적
  - 나. 작성과정
  - 다. 업무전략기획 체계도
2. 위원회의 비전(Vision)
3. 위원회의 사명(Mission)
4. 위원회의 운영원칙(Operational Principles)
5. 2기 위원회의 5대 목표(Goals)
6. 실천계획(Strategies)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

## 1. 업무전략기획 초안 작성 개요

### 가. 작성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01. 5. 24.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sup>1)</sup>”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차별적 관행들을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동안 낮설어 보였던 ‘인권’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이를 통해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사회에 각인시켜왔다.

위원회는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부여받은 위원회의 사명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위원회 활동방향과 각 업무영역별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이 업무전략기획안을 작성하였다. 이 기획안은 다소의 추상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추상성은 이 기획안이 각 년도에 작성할 연간 업무계획을 매개로 실천될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 기획안은 연간 업무계획을 작성하는 사람들의 창발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 나. 작성 과정

- 위원회 발전전략기획안 작성을 위해 발전기획단 구성 · 운영계획 수립(‘05.8.30)
  - 위원회 내에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산하에 내부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3개 팀(업무전략 기획팀, 위상강화 기획팀, 역량강화 기획팀)을 둠.
  - 팀 구성은 단장이 3개 팀의 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3개 팀의 팀장은 각각 박찬운 인권정책국장, 김형완 상담센터 소장, 나영희 교육협력국장으로 함.
  - 발전기획단 활동시한은 2005. 12. 10.까지 약 3개월로 하며, 3개 팀은 각각 위원회 3개년 업무전략, 위원회 위상 강화, 위원회 역량 강화 기획안을 작성함.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발전기획단 활동계획 전원위원회 보고(05. 9. 12.)

○ 발전기획단 구성 및 활동개시(05. 9. 13.)

- 팀 구성원 확정(단장 포함 총 27명)

팀	이 름	소 속	비 고
업무전략 기획 팀 (10명)	팀장	박찬운	인권정책국장
	외부 위원 (5명)	김종서	배재대 법학과 교수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장주영	변호사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실무팀 (4명)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심상돈	인권침해조사1과장
		이수연	차별조사2과
		강명숙	인권교육담당관실
		임 송	정책총괄과
			간사
위상강화 기획 팀 (8명)	팀장	김형완	인권상담센터 소장
	외부 위원 (5명)	임지봉	건국대 법학과 교수(헌법학)
		하승수	변호사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실무팀 (2명)	서경석	인하대학교 교수
		김성준	법무담당관
		김정린	인권상담센터
			간사
역량강화 기획 팀 (8명)	팀장	나영희	교육협력국장
	외부 위원 (5명)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대훈	성공회대 연구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정경수	순천대 법학과 교수
	실무팀 (2명)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해외정보실장
		심민석	자료실장
		박숙미	전문위원
			간사

○ 팀별 초안 작성 추진(‘05. 9. 13. ~ 11. 11.)

- 위원회 내부 팀이 초안을 작성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초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
- 각 팀별 팀 전체회의(5~7회) 및 내부팀 회의(10회 내외) 실시
- 단장은 총 7회의 내부 발전기획단 회의를 통해 각 팀의 활동 사항을 보고받고, 전체 발전기획단 활동을 통합·조정

※ 발전기획단 모든 활동 내용은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 제23차 전원위원회에 발전기획단 활동경과 보고 및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11. 14)

○ 전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발전기획단 활동방향 논의를 위한 제22차 상임위원회 개최(11. 16)

○ 제24차 전원위원회에 상임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11. 28.)

※ 정책위원장(최영애 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김호준, 정강자 상임위원, 신혜수, 김만흠 비상임위원 총 5명의 인권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함

○ 제1회 특별위원회 개최(12. 14)

- 발전기획단 활동결과 보고 및 향후 특위운영방안 논의

※ 발전기획단은 해산하고, 특위의 공식 명칭은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로 함. 특위의 실무보좌는 사무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동 결정에 따라 사무처는 전 업무전략기획팀 간사가 전임으로 전 위상강화기획팀 및 역량강화기획팀 간사가 비전임으로 특위 실무를 보좌하기로 함

○ 이후 총 7회(2005.12.14.~2006.1.17.)의 발전전략기획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전략기획안을 검토

※ 특위 주요논의 사항 : 별첨 자료 참조

**다. 업무전략기획 체계도 : 다음페이지 참조**

비전  
(Vision)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명  
(Mission)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명에 헌신한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문구 수정)
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1.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



운영원칙  
(Operational Principles)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ty), 다양성(Diversity),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예의와 헌신(Courtesy and Commitment),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 협력과 연대(Cooperation and Solidarity)

5대 목표  
(Goals)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2. 국제적 수준의 인권 제도 및  
관행의 구축

3. 권리 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5. 위원회의 역량 강화



1.1.사회권 관련 정책개발을 통한 인권영역의 확장

1.1.1.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1.1.2.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1.1.3.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2.1.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2.1.1.정부의 인권NAP의 수립·이행을 위한 지원

2.1.2.및 모니터링

2.1.3.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연구

1.2.차별시정기능 강화

1.2.1.차별금지법 제정

1.2.2.차별 사유별/역별 판단기준 정립

1.2.3.조전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1.3.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1.3.1.맞춤형 인권 상담 체계 구축

1.3.2.소송 지원체계 구축

1.3.3.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단체 간 협력 연계체계 촉진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3.1.1.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 정비

3.1.2.대민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실시

3.2.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3.2.1.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3.2.2.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3.2.3.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강화

3.2.4.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유관 기관/

단체와의 협력 강화

3.2.5.지역사무소 확산 및 역할 강화

3.3.인권 친화적 권리구제 실현

3.3.1.인권시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실현

3.3.2.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질차 및 기법

개발

4.1.인권교육 기반 구축

4.1.1.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4.1.2.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4.1.3.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

4.2.다양한 인권 교육의 제도화 추진

4.2.1.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

4.2.2.공공부문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4.2.3.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 강화

4.3.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행체계 구축

4.3.1.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4.3.2.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4.3.3.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5.1.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5.1.1.위원회 조직 및 운영체계 정비

5.1.2.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강화

5.1.3.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5.1.4.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5.2.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5.2.1.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

5.2.2.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흡보 및

정보공유

5.2.3.위원회 구성원의 직무 윤리강화

5.3.국내외적 협력체계 강화

5.3.1.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체계 강화

5.3.2.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협력

강화

5.3.3.아시아지역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기여

## 2. 위원회의 비전(Vision)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sup>2)</sup>”이다. 위원회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3. 위원회의 사명(Mission)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명에 헌신할 것이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1.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토대를 구축한다.

## 4. 위원회의 운영원칙(Operational Principles)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ty), 다양성(Diversity),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예의와 혜선(Courtesy and Commitment), 인권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 협력과 연대(Cooperation and Solidarity)

2) 위원회의 비전은,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슬로건으로 사용하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과 주요국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의 핵심적 내용—“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는 인권기구”—을 결합함.

- 가. 독립성** : 위원회는 국가 혹은 사회의 모든 세력 및 위원회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 나. 전문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와 목표,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및 기술을 확보하고, 인권의 가치에 헌신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투자하며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편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다.
- 다. 다양성** : 위원회는 사회 각 부문으로부터 자격을 갖추고 인권의 가치에 헌신하고자 하는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차이가 존중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며, 갈등의 해결방식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지향한다.
- 라. 투명성** :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위원회 활동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인사·재정 운영의 청렴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마. 책임성** :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활동이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인권보호 및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 바. 접근성** : 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바람을 잘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원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위원회의 문턱을 낮추며, 특히 스스로 위원회를 찾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사. 예의와 헌신** :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의 사명과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함으로써 인권실현을 위해 헌신하고, 조직의 내·외부 고객에 대하여 항상 예의바른 태도로 신의를 다한다.
- 아. 인권감수성** : 위원회 구성원은 인권문제가 게재되어 있는 특정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한다.
- 자. 협력과 연대** : 위원회는 인권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국내외 기관/단체/개인 및 잠재적 피해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바탕으로 활동한다.

## 5. 2기 위원회의 5대 목표(Strategic Goals)

-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목표 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목표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목표 5. 위원회의 역량강화

###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위원회는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를 보호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된 관심 영역이 되어야 하며, 위원회가 보호해야 할 이들의 권리에는 이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권리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들이 처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개선, 이들이 제기한 차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광범위한 인권이슈에 관여해야만 했던 설립 초기의 위원회가 이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 하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때론 위원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역량부족, 제도상의 한계 등으로 권리보호가 불완전한 수준에 머무르기도 하였다.

제2기 위원회는 이 분야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을 종합적인 계획하게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차별시정 기능 강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한편으로는 이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의 강화를 기반으로 이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시행하고자 한다. 특히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사회권 관련 정책개발을 통한 인권영역의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추구하는 인권이 국내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우리가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적극적 수용이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국내법적 기준 하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던 집단 및 개인에 대해 보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위원회는 아직 국내의 많은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이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3년 동안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을 위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에 주력하고 아울러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목표 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위원회의 조사·구제 활동은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인권침해 행위에 내포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이 분야의 활동을 위해 위원회 역량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왔으며, 이는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다만, 과거 4년 동안의 위원회 활동의 결과, 이 분야에 대한 위원회 기능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이를 위해 제2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이 분야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보다 다양화되는 조사·구제 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를 확립한다. 둘째, 진정인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인권친화적인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인권침해 예방활동 및 현장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위원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목표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는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

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홍보가 위원회의 주요 사명 중에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첨경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은 비단 인권교육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모든 활동 속에 내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2기 위원회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인권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둘째,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의무화, 공공부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등 다양한 인권교육과정을 구축·시행한다. 셋째,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체제를 구축한다.

## 목표 5. 위원회의 역량 강화

위원회는 지난 3년간 위헌의 시비 속에서도 파리원칙이 천명한 국가인권기구의 정체성인 무소속·독립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부 내에서는 전례가 없던 무소속 독립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식된 측면이 있지만, 대국민 위원회의 위상은 여전히 불명확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기관의 지적과 비난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인권문제를 적극적·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믿음직한 대안적 권리구제 기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적 토대(법, 제도, 정책 등) 발전을 이끄는 기관, 인권

영역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인권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향후 3년간 이에 필요한 위원회의 위상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7. 실천계획(Strategies)

###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 1.1. 사회권 관련 정책개발을 통한 인권영역의 확장

- 1.1.1. 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 1.1.2. 인권영역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 1.1.3.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 1.2. 차별시정 기능 강화

- 1.2.1. 차별금지법 제정
- 1.2.2.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 1.2.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 1.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1.3.1. 맞춤형 인권상담체계 구축
- 1.3.2. 소송지원 체계 구축
- 1.3.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 연계체계 촉진

## **세부목표 1.1. 사회권 관련 정책개발을 통한 인권영역의 확장**

위원회 활동이 논리적인 기반과 사회적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권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는 그동안 위원회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지 못한 분야이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사회권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몇몇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1.1.1. 사회권 상황 실태조사와 그 활용**

인권위법에 의해 위원회에 위임된 인권상황 실태조사 기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효하다.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소외계층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세상에 알림으로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특정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권상의 문제점과 그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들을 제공한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조사·연구는 그 것들에 기초하여 개발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인 설득력과 자신감을 제공할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유념하고자 한다. 첫째는 향후 3년간 사회권 분야의 인권상황실태조사에 주력한다. 둘째, 실태조사의 결과가 정책 개발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 하에 실시한다. 셋째, 사전에 설정된 정책개발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 분야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의 결과가 위원회 내부의 역량으로 축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이 전략기획에 기초하여 연간 업무계획 수립 시 해당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실시한다.

### **1.1.2. 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자유권 분야의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말은 흔히 제2세대 인권으로 일컬어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나 발전권, 환경권 등과 같은 제3세대 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연구 및 개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권논의에서 흔히 언급되는 바와 같이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한 것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는 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 인권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인권의 영역, 즉 위원회가 관여하는 활동범위를 제2세대 인권 및 제3세대 인권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인권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노력은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내에서 이들 권리의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활동들을 모색하는 것이며, 특히, 이들 권리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현실에서 이행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 **1.1.3.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역량의 강화는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진 위원회로서 일시적으로 모든 분야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위원회는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위원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 **세부목표 1.2. 차별시정 가능 강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이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차별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위원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 그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위원회 조사관들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사건을 다룸에 있어, 인권침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 기능 활성화 등 보다 다양한 피해자 구제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실천계획

### 1.2.1. 차별금지법 제정

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제 그 노력의 결과로 법 초안이 완성단계에 있다. 이 초안은 사회 구성원의 차별의식을 개선하고, 차별행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적절히 다를 수 있는 많은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희망하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1.2.2.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인권위법 제2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등 19개 항목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차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결정예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위원회로서 제기된 특정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관, 결정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인권이 갖는 추론적인 성격에 비추어 반드시 잘 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위원회는 위원회가 판단을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판단기준들을 사전에 설정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최대한 객관화되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어떤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사회에 제시함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 **1.2.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인권위법 제42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지금까지 이 조정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이는 위원회의 조사·구제 활동이 주로 조사중심의 분쟁해결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진정사건 등을 다룸에 있어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사회정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기능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다양한 방법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방법 들을 개발·적용하고자 한다.

### **세부목표 1.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 연계체계 구축**

위원회가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그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는 것은 위원회의 본질적 사명 중에 하나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인권위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 들(예: 진정함 설치 및 면전진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많은 분야(예: 구금

시설, 정신보건시설 등)에 접근하여 성과들을 일궈왔다. 하지만 아직도 위원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분야들이 존재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이미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인권현장에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례의 경우,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 법적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가져올 사회적 효과에도 주목 할 것이다.

## 실천계획

### 1.3.1. 맞춤형 인권상담체계 구축

권리구제 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순회상담버스 운영 및 인권현장 상담사업 등을 통해 찾아가는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취약계층에 적합한 상담기법을 개발, 실시하도록 한다.

### 1.3.2. 소송 지원체계 구축

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는데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선별하여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위원회가 도움을 줌으로써 인권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소송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1.3.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단체 간 협력연계 체계 구축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많은 기관/단체/개인들과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협력관계의 일환으로 인권침해 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모니터링 및 지원을 위한 소통 경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 2.1.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이행을 위한 자문 및 모니터링
- 2.1.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연구
- 2.1.3.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실태조사 및 정비
- 2.1.4.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 **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2.2.1. 인권 의제 발굴 체계 확립
- 2.2.2. 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 2.2.3. 주요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 의견개진

### **세부목표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위원회는 우리가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의 적극적 수용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첨경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그 기반구축을 업무의 주요 목표로 삼아 매진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2.1.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국제사회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의 수립은 한국 사회의 인권발전에 큰 획을 긋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이 계획이 정부에 의해 적절히 수

립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NAP의 수립과정과 그 이행과정에서 정부의 자문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그 내용과 이행절차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다.

### **2.1.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연구**

위원회는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이 국내에서 완전하게 이행되는 데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인권조약이 요구하는 인권수준과 우리의 제도 및 현실이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지를 정확히 검토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위원회와 관련기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지속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다.

### **2.1.3.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실태조사 및 정비**

위원회는 우리가 가입한 주요 국제조약이 얼마나 국내에서 실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관련 법령의 문제점이 확연히 들어날 것이며, 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인권제도의 구축은 결국 국내법의 정비로 귀결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2.1.4.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강화**

위원회는 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에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계속 촉구할 것이다. 하지만, 인권과 관련한 제도 및 관행의 정비는 결국 해당 기관에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제도 및 관행의 정비를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제도 및 관행의 정비가 필요한 분야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세부목표 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위원회는 매일 같이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위원회는 살아 있는 인권보호의 보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실천계획**

#### **2.2.1. 인권의제 발굴 체계 확립**

수다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것에 위원회가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문제에 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위원회의 역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위원회는 그 내에 인권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위원회가 인권현안에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2.2. 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위원회의 인권정책기능은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 바깥의 요구에 의한 인권정책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인권정책의 수요가 무엇인지 스스로 발굴하는 능력과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 **2.2.3. 주요 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

위원회가 특정한 인권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인권사건이 사법부의 심리 중에 있을 때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인권위법에 명시된 이 소중한 기능을 통해 위원회는 그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인권의 가치를 우리의 사법부에 전달할 것이

다. 나아가 인권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제·개정 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위원회의 기본적인 임무이므로 이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

### **목표 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3.1.1.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 정비

3.1.2.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실시

#### **3.2.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3.2.1.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3.2.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3.2.3. 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강화

3.2.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

3.2.5. 지역사무소 확산 및 역할 강화

#### **3.3. 인권 친화적 권리구제 실현**

3.3.1.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실현

3.3.2. 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

#### **세부목표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위원회가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차별성 있는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빠르고, 쉽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권리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인권침해 사건은 유형과 내용, 형식에 있어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화되는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적합한 구제방법을 개발, 적용하여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쉽고 빠르고 값싼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위원회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 증진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효율적이며 상생적 갈등해결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권리구제의 영향과 효과가 최대한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3.1.1.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체계 정비

사건의 접수 이후 기초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접수된 권리구제 사안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그동안 처리한 다양한 유형의 진정사건들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 조사구제 매뉴얼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건처리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3.1.2.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실시

차별사건 및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권리구제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사법적, 재판적 분쟁해결방식에서 벗어난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조직적 역량을 축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특히 사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정, 중재 양식은 조정 본연의 취지와 달리 운

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외국 NI들의 모델과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개발하도록 한다.

### **세부목표 3.2.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개별 진정사건 처리만으로는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검·경 등 어느 정도 진정사건 처리 경험을 통하여 인권침해 관련 구조적 문제가 파악된 분야는 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를 활성화 하여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관행, 제도,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사무소, 지역 인권단체 등과 연계하여 인권침해 현장에서 관련 종사자들 및 수용자들과의 대화, 교육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실천계획**

##### **3.2.1.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권조사, 방문조사, 실태조사 실시권한 등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고, 향후 3년간 이러한 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하지만, 컴퓨터시설, 병영시설,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 등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이들 분야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3.2.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이 제기되기 전에

라도 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파악, 현장 긴급 상황에 대한 조치, 인권침해 상황 해소·완화 노력을 기울이는 활동을 강화할 나갈 것이다. 또한 진정제기자체가 어려운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

### **3.2.3. 기획조사(실태방문직권 조사) 기능 강화**

그동안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 영역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도별 기획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실시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실태조사, 방문조사 등이 서로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동안 충분한 관심을 집중하지 못했던 군대내 인권, 다수인 보호시설 분야의 경우 기획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인권침해 심각성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권고하도록 한다.

### **3.2.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

인권보호와 그 수준의 향상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피진정기관들의 긍정적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근래, 법무부 인권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등 인권전담부서와의 협조는 물론이고, 영역별로 인권 관련 진정사건 해결 과정이나 인권위 권고 후 그 이행과정에서 관련 피진정기관 및 필요시 인권단체까지 포함된 실무급 협의·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형식적인 수용이나 변화가 아닌 실질적인 수용,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3.2.5. 지역사무소 확산 및 역할 강화**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인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위원회에 대한 지지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는 지역사무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술적 지원 강화, 지역의 인권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연락체계 활성화, 지역사무소를 통한 해

당 지자체 및 지역NGO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지역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NGO와의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의 인권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위원회, 지역사무소, 인권NGO 및 시민사회단체 각각의 역할을 인식, 조정을 통해 지역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이후 대구 등 주요거점 도시로 확대 운영 하여 지역사무소 신설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의 인권문화 확산 및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체계(MOU 등)를 구축하고, 타 지자체에 자극을 축발한다.

### **세부목표 3.3. 인권친화적 권리구제 실현**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사 진행 및 실질적인 인용률 제고로 진정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진정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인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3.3.1.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실현**

그동안 위원회는 제기되는 진정사건 처리에 역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나치게 교정시설 수용자, 형사절차 과정에 있는 피의자들의 인권문제에 편중되게 위원회 역량이 투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제2기 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제기 조차 하지 못하는 정신보건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 및 의료시설 등에 인력을 배분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 **3.3.2. 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

다른 민원처리기관과는 달리 국민 인권 보호의 최 일선에 서야 할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피해

자들의 상처와 분노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보다 인권친화적인 조사와 권리구제 기법 등을 개발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조사과정에서도 공감적 경청 등의 상담기법을 활용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의 회복과 더불어 심리적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관료적 국가기관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한 권리구제기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다층적인 기법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 **목표 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4.1. 인권교육 기반 구축**

- 4.1.1.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 4.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 4.1.3.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

### **4.2. 다양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추진**

- 4.2.1.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
- 4.2.2. 공공부문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 4.2.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교육 강화

### **4.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행체계 구축**

- 4.3.1.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 4.3.2.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
- 4.3.3.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 **세부목표 4.1. 인권교육 기반 구축**

위원회가 2005년도에 전국 15세 이상 성인남녀 1,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응답자의 5.3%만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가 매우 적다고 응답했

다. 이 통계수치는 인권 친화적 문화확산을 위해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사회구성원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4.1.1.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인권교육의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인권교육 활성화와 질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교육정책수립과 교육 실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태조사로 인권교육기회 보급의 현황을 점검하고 인권교육 관련 연구 과제 개발 지원으로 정책 입안 근거 마련 및 인권 교육 연구 및 활동기반을 구축한다

### 4.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체계적 인권교육 실시 및 진흥을 위해 주기별로 인권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교육이 정착·활성화 될 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UN에서도 인권교육10개년 계획(1995-2004)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한 다음 시기별로 인권교육 집중강화 영역을 선택하여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7)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인권교육원 설립이나 인권교육법 제정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본 계획 수립을 각 해당기관에 권고 한다

### **4.1.3. 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강화**

인권교육 전문가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수립 및 인권교육 활동에 관한 열린 협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워크숍, 메일링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인권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인권교육 전문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 한다

### **세부목표 4.2. 다양한 인권교육의 제도화 추진**

인권교육 실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속적, 체계적인 인권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고 시급하다고 한다. 대상별, 영역별, 주제별, 기관별로 체계적으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인적 및 물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 과정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천계획**

##### **4.2.1.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할 것은 UN 인권교육10개년계획(1995-2004) 및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7)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각급학교에 인권 교육과정을 필수과정으로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급학교별 인권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학급학교에서 인권교육 과정이 운영되도록 협의·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모니터링 하며, 인